

◎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882호

「주택법」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

2022년 07월 05일

국토교통부장관

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

- 지정해제 지역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(대부동동·대부남동·대부북동·선감동·풍도동), 대구광역시 수성구, 대전광역시 동구·중구·서구·유성구,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
- 해제일 : 2022년 7월 5일
- 효력발생시기 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※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

시·도	현행	조정('22.7.5.)
서울	서울특별시 전역(25개區)	좌동
경기	과천시, 성남시 분당구, 광명시, 하남시, 수원시, 성남시 수정구, 안양시, 안산시 단원구, 구리시, 군포시, 의왕시, 용인시 수지구, 용인시 기흥구, 동탄2택지개발지구 <sup>주1)</sup>	과천시, 성남시 분당구, 광명시, 하남시, 수원시, 성남시 수정구, 안양시, 안산시 단원구 <sup>주4)</sup> , 구리시, 군포시, 의왕시, 용인시 수지구, 용인시 기흥구, 동탄2택지개발지구 <sup>주1)</sup>
인천	연수구, 남동구, 서구	좌동
대구	수성구	-
대전	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	-
세종	세종특별자치시 <sup>주2)</sup>	좌동
경남	창원시 의창구 <sup>주3)</sup>	-

주1) 화성시 반송동·석우동, 동탄면 금곡리·목리·방교리·산척리·송리·신리·영천리·오산리·장지리·중리·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

주2)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18호(2006.10.13.)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,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

주3) 대산면, 동읍 및 북면(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,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外) 제외

주4) 대부동동, 대부남동, 대부북동, 선감동, 풍도동 제외